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. 1. 22 선고 2018가단2828 판결 [건물철거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8. 12. 18

판결 선고 2019. 1. 2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,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5.부터 2019. 1. 22.까지는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083,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. 11. 29.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갑 제2호증의 기재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피고가2016 . 6. 1.부터 2018 . 10. 30. 까지 2년 5개월 동안 원고들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대46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13, 12, 11,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㎡를 점유한 사실, 위 기간 동안의 위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103,67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,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6. 11. 5.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건물 서쪽 측면 외부벽체와 내부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는 등으로원고에게 수리비 980,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,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,원고들 소유의 건물의 위 파손이 피고의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그렇다면,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3,676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. 11. 29.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12. 5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1. 22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나상훈

별지